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 례안심사보고서

1995. 2.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2월 22일 구청장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2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1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1995년 3월 14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)

- 가. 제안이유
자치구의 행정기구와 그 사무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선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○자치구의 실·국 및 과의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규정함.
○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조대현)

지방자치법 제102조(행정기구)와 '94. 12. 31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(시·군·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) 제3항 및 '95. 1. 9자 서울특별시의 준칙안 시달에 맞추어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안 제출한 것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 례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0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'95. 2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자치구의 행정기구와 그 사무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선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자치구의 실·국 및 과의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규정함.
-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3. 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
- 대통령령 제14480(94. 12. 31)호
→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
- 시정 1250-11 (95. 1. 9)호
→직제 관련 법규정비 철저 지시

4. 조례(안) : 별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 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(이하 "영등포구"라 한다)에 두는 실·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·감사실·시민봉사실·총무국·재무국·시민국·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을 둔다.

제3조(문화공보실)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2.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
3. 문화·예술에 관한 사항
4.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

제4조(감사실) 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 2. 감사·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·처리
 3.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
- 제5조(시민봉사실) 시민봉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문서·관인·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
 2.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·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
 3. 제증명의 발급·진정의 접수처리·호적에 관한 사항
 4. 구·동 민원업무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- 제6조(총무국) ①총무국에 총무과·기획예산과·국민운동지원과·생활체육과 및 민방위과를 둔다.
- ②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인사·조직·보안에 관한 사항
 2.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
 3. 지방의회·동행정에 관한 사항
 4. 기타 청내 다른 실·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- ③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구정의 기획·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 2. 예산의 편성·배정·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
 3.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
 4.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
- ④국민운동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2.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3.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4.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5.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·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⑤생활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생활체육·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2. 생활체육·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 3.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
- ⑥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전시운영계획·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 3. 민방위대 설치·조직편성·동원에 관한 사항
 4.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
 5. 병사에 관한 사항
- 제7조(재무국) ①재무국에 재무과·세무관리과·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.
- ②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국·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2. 공사의 도급·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
 3. 지출 및 세입·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4. 회계검사·공채·직원저축에 관한 사항
 5.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- ③세무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구세입의 총괄(일반회계·특별회계 포함)
 2. 구세입 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
 3. 체납세 징수 및 정리에 관한 사항
 4. 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- ④부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취득세, 등록세, 자동차세, 농지세, 도축세, 경주마권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 2.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면허세 및 주민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 3.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 4.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
- ⑤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
 2. 지적전산·지적측량에 관한 사항
 3. 토지이용 정리에 관한 사항
 4.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
 5.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
 6. 토지거래허가·신고에 관한 사항
 7. 부동산 중개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 8. 지적 민원처리
- 제8조(시민국) ①시민국에 사회복지과·가정복지과·위생과·산업과·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.
- ②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
 2.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
 3.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

| | |
|--|--|
| <p>4. 의료보호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</p> <p>5.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</p> <p>③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정복지·여성복지·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2. 노인복지·유아교육·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3.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 4. 소관법인의 시설 인·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. 근로청소년복지·요보호아동예방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<p>④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식품위생업소(제조업소는 제외)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.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. 숙박업·목욕장업·이미용업·유기장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.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<p>⑤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장의 지도·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. 물가조사·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3. 연료판매소허가(신고) 및 지도감독(가스류 제외)에 관한 사항 4.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5.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6. 가스시공업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. 농수산유통에 관한 사항 <p>⑥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기오염·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. 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.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4.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.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<p>⑦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.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3.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4. 공중화장실의 설치·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| <p>5.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p> <p>6.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</p> <p>제9조(도시정비국) ①도시정비국에 주택과·도시정비과·교통행정과·교통지도과 및 건축과를 둔다.</p> <p>②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. 시영주택의 관리·주택개발·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.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.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·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5.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<p>③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계획·도시개발·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 2.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·허가(개발제한구역은 제외) 3.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<p>④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. 버스·택시 화물업체의 사업면허 인허가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3. 교통영향평가,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4.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<p>⑤교통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불법 주·정차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2. 버스전용차선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3. 자동차 정비업체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. 주·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5. 주차장 설치 및 도로표지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. 자동차 운수 행정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<p>⑥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. 건축허가·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.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4. 건축업자 지도감독 5. 영선 업무에 관한 사항 <p>제10조(건설국) ①건설국에 건설관리과·토목과·하수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.</p> |
|--|--|

- ②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도로·지하도·하천·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
 2. 점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 3. 토지의 사용·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
 4.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
 5. 건설기계 등록 검사 승인에 관한 사항
 6. 과적중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
 7.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- ③토목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
 2.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 3.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
 4. 지하도·지하광장·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

- ④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하수행정의 종합조정
 2. 하수도·하천 및 우수지의 건설·유지관리
 3.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
 4. 배수펌프장 및 배기시설의 관리
 5. 하수도사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 6. 지하수 개발 업무 및 수자원 보존

- ⑤공원녹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공원·녹지관리의 총괄
 2.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
 3.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
 4. 공원녹지대조성 및 시설유지관리
 5.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

제11조(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) ①실·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.

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